

홈리스복지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64
----------	-------

발의연월일 : 2011. 2. 18.

발 의 자 : 이낙연 · 최인기 · 박은수
박주선 · 추미애 · 조승수
양승조 · 문학진 · 강창일
김재균 · 이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량 실직자가 발생하고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달리 홈리스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홈리스를 시설에 입소시켜 의식주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해, 쪽방 · 만화방 ·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나 불안정한 임대료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랑인이나 노숙인에게 주거 · 일자리 지원 등 프

로그램이 원활히 연계되지 못해 이들이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일한 서비스의 대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전문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현재 업무의 소관도 부랑인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노숙인 쉼터의 운영은 지방정부가 맡는 것으로 분리돼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홈리스’의 정의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및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는 홈리스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

지조치의 실시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
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하여 예방적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홈
리스의 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홈리스를
홈리스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하거
나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 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
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
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

- 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홈리스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홈리스시설’의 종류를 홈리스복지시설과 홈리스상담센터로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 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받으려는 홈리스는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보호기관 및 홈리스상담센터의 장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홈리스에 대하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파.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입소자의 연고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및 복지조치의 연계 등으로 입소자가 지역사회복귀 준비가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하.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자활프로그램, 건강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홈리스복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리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자
 - 나.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자
 - 다. 퇴거 등의 사유로 주거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자
2. “홈리스시설”이란 홈리스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홈리스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로 최소한 적절성을 갖춘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예방하고,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홈리스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리스의 권리와 책임) 홈리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거권의 보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생활지원의 원칙) ①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는 홈리스가 주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은 홈리스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홈리스의 인권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의 실시에도 있어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

②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의 실시에서 인권지침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상의 조치) ① 홈리스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홈리스 지원체계 및 복지조치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장기적 복지소요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와 평가에 기반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홈리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홈리스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홈리스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조달방안
4. 홈리스 발생의 예방방안
5.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홈리스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홈리스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 ①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홈리스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리스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홈리스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홈리스 복지에 관한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지역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및 지역위원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지조치

제14조(홈리스 발생의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가 취약한 국민이 주거를 잃게 될 것에 대비하여 예방적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홈리스 발생을 예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3. 임대주택의 임대 및 임대보증금의 지원
4. 임시주거비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원

②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원활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홈리스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업활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의 자활지원사업의 실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리상담 및 복지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리상담을 통하여 홈리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홈리스복지시설 입소 등 주거지원 안내
2.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송
3. 직업활동지원
4. 생활편의 제공
5. 심리상담 제공
6.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홈리스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의 제공

제19조(일시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홈리스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처를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일시보호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홈리스시설

제20조(홈리스시설의 종류) 홈리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리스복지시설
2. 홈리스상담센터

제21조(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시설수용 인원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홈리스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홈리스상담센터) ① 홈리스상담센터는 홈리스를 상담·사정하여 홈리스에게 홈리스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연계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복지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② 홈리스상담센터의 세부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홈리스복지시설의 종류) ① 홈리스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홈리스 일시보호시설: 홈리스에 대한 복지조치 연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홈리스 단기재활시설: 홈리스를 필요한 기간 보호하여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의 연계를 지원하는 시설

3. 홈리스 재활시설: 정신장애 및 중독 등 정신건강의 취약성으로 사회적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홈리스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홈리스 요양보호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홈리스를 보호하여 필요한 요양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홈리스복지시설 입소 신청 등) ①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받으려는 홈리스는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기관 및 홈리스상담센터의 장은 홈리스복지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홈리스에 대하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홈리스를 입소시킨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홈리스복지시설 퇴소 등)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리스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이하 “입소자”라 한다)를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입소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른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3. 입소자의 연고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경우

4. 복지조치의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복귀가 준비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소자를 즉시 퇴소시키거나 보호기관과 협조하여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자를 퇴소시킨 경우와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무단 퇴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활프로그램의 제공)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심리재활, 사회기술훈련, 금전관리, 알코올중독이나 정신건강 치료 등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은 전문기술과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소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적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활프로그램의 제공) ①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시설 내 작업장 및 공동체 사업 운영, 시설 외부의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 참여 등 자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불법적인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자재 구입 등 필수적 소요 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소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활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강관리)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입소 후 10일 이내 임시건강진단 실시 및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2. 전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이송
3.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및 위생관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기록부 등 관련 일지 작성

제29조(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홈리스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홈리스의 요청에 따라 홈리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사업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홈리스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홈리스복지시설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홈리스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홈리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홈리스복지시설 등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3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홈리스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홈리스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검사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비밀 유지의 의무) 홈리스시설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법인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홈리스시설이 아닌 자는 홈리스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나 업무의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고도 홈리스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홈리스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37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 및 상담보호센터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홈리스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홈리스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홈리스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홈리스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홈리스복지법」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홈리스복지법」에 따른 홈리스

홈리스복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안 제12조)

홈리스의 예방, 홈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나. 주거지원(안 제1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사회주거서비스센터(안 제15조)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원활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무료진료소 운영사업(안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마. 거리상담사업(안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리상담을 통하여 홈리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안 제2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2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랑인시설 37개소, 노숙인쉼터 76개소, 상담보호센터 10개소가 이미 설치·운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다고 보아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2) 안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에게 입소 등 주거지원안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이송, 직업활동지원, 노숙인·부랑인 심리상담 등을 거리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거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서울·부산·대구의 거리지원사업 사례를 제시할 뿐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3)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4)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격 수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하며, 노숙인·부랑인 임대주택을 건립하며,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1년 199억 3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985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중앙홀리스정책조정위원회	4	5	5	5	5	24
임대주택 주거지원	5,160	3,870	3,870	3,870	3,870	20,640
사회주거서비스센터	1,869	1,925	1,983	2,042	2,103	9,922
무료진료소 운영	12,870	13,200	13,590	13,965	14,355	67,980
계	19,903	19,000	19,448	19,882	20,333	98,566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이낙연의원실 양재원 비서관
(02-788-2226, mrjj@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노숙인·부랑인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1) 및 동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2)는 “부랑인(浮浪人)”을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노숙인(露宿人)”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는 “부랑인”으로,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자는 “노숙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입소시설을 중심으로 부랑인·노숙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랑인 복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③ 삭제 <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3, 2005.1.5>

1. "부랑인(浮浪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1의2. "노숙인(露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2. "노숙인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소를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의3. "상담보호센터"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중의 하나로서 부랑인과 노숙인 등을 상담하고 이들을 부랑인복지시설이나 노숙인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사업시행주체로서 ① 부랑인자활지원사업³⁾ ②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사업⁴⁾ ③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⁵⁾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노숙인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숙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랑인은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8,881명이고, 노숙인은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4,315명이다.

[표 2] 부랑인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6월
전국	9,492	9,266	8,881
서울	2,675	2,549	2,289
부산	551	552	540
대구	1,176	1,130	1,129
인천	590	569	579
광주	226	211	204
대전	233	235	232
경기	663	659	644
강원	251	247	250
충북	873	897	841
충남	149	148	146
전북	200	185	177
전남	776	760	766
경북	358	357	356
경남	583	582	557
제주	188	185	174

3) 사업목적: 시설입소 부랑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활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예산: '08년 91백만원, '09년 83백만원, '10년 83백만원

4) 사업목적: 부랑인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용 지원
 관련예산: '08년 15,938백만원, '09년 19,129백만원, '10년 20,101백만원

5) 사업목적: 부랑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관련예산: '08년 3,501백만원, '09년 3,501백만원, '10년 1,500백만원

[표 3] 노숙인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6월
서울	3,060	2,935	2,776
부산	468	550	403
대구	324	298	301
인천	203	191	237
광주	28	23	20
대전	170	173	139
울산	29	20	28
경기	369	308	261
강원	77	78	86
충북	13	14	13
충남	17	30	27
전북	36	40	19
제주	2	4	5
계	4,796	4,664	4,315

부랑인·노숙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부랑인의 경우 2010년 216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노숙인의 경우 234억 3,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4] 부랑인·노숙인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랑인	17,082	17,045	18,710	19,530	22,713	21,684
노숙인	18,005	28,710	27,360	29,523	33,812	23,430

2. 중앙흡리스정책조정위원회

안 제12조는 흡리스의 예방, 흡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흡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현재로서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50:50의 비율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민간위원은 7인이 위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정부위원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7인에 대하여는 위원회 참석비를 1일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⁶⁾ 따라서 회의 1회당 위원회 참석비가 7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비는 위원회 회의자료 배부, 인쇄물 제작 등에 관한 비용으로서 2009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비가 위원 1인당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1회당 1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위원회는 흡리스의 예방, 흡리스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리는 것이므로 위원회 회의는 반기 단위로 열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2016년까지 5년간 위원회 관련 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2016년까지 인상되지 아니할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 운영비는 물가상승률⁷⁾을 고려한 경상가격 수준으로 추계한다. 제정안 제9조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2011년 448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32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위원회 참석수당은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2010. 1, pp. 98~99 참조.

7) 국회예산정책처(2010.5),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p. 7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6%	2.7%	2.6%	2.9%	2.8%

[표 5] 위원회 관련 비용: 2011~2015년

(단위: 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위원 참석비	140	140	140	140	140	
위원회 운영비	308	316	325	334	343	
총비용	448	456	465	474	483	2,326

3. 주거지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노숙을 탈피하여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월세(최장 3개월, 평균 2개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생활용품 지원(주거지원과 함께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지원), 주민등록복원 및 장애인 등록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사례관리 지원(주거지원 이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 도움), 지역사회 정착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다.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 및 보호시설에 의한 보호 등을 열거하며 제③항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홈리스에게 지원되는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유사한 시설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부자시설” 신축사업에 필요한 비용⁸⁾을 참고로 하여 16개 시·도에 1개소씩 홈리스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하기로 한다.

8) 부자시설 신축 설계비(2010년): 1,290㎡×1,000천원=12억 9,000만원

[표 9] 주거지원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임대주택 개소수(A)	4	3	3	3	3	
설치비용(B)	1,290	1,290	1,290	1,290	1,290	
총비용(A*B)	5,160	3,870	3,870	3,870	3,870	20,640

4. 사회주거서비스센터

안 제15조는 국가는 홈리스에 대한 원활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국가가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할 뿐이고 사회주거서비스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업무는 제 ③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홈리스에게 지원되는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유사한 센터인 “중앙자활센터”를 참고하여 비용을 추계하기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⁹⁾에 따른 중앙자활센터는 설치비의 경우 위탁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운영비는 2010년을 기준으로 18억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인건비 : 7억 500만원(14명) ② 관리운영비 : 2억 3,700만원(사무실임차 등) ③ 사업비 : 8억 7,300만원(성과관리체계구축, 교육훈련, 사업개발·조사연구, 네트워크구축, 홍보, 사업단생산물 내수거래 촉진 사업 추진)이다. 사회주거서비스센터도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①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5.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자활지원센터와 동일한 규모로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중앙자활지원센터의 경우 매년 3%씩 운영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계한다. 제정안에 따라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2년 18억 6,9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99억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사회주거서비스 센터 설치·운영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센터 개소수(A)	1	1	1	1	1	
운영비(B)	1,869	1,925	1,983	2,042	2,103	
총비용(A*B)	1,869	1,925	1,983	2,042	2,103	9,922

5. 무료진료소 운영사업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무료진료소는 서울, 부산, 대전에 각 1개소씩 설치·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용산구에 무료진료소(시설규모: 132.24㎡)를 200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① 거리노숙인 대상 진료 및 투약 ② 상담을 통한 시설입소 유도 및 병원 진료의뢰 ③ 결핵환자 관리(쪽방 및 건강식 제공, 투약관리 등) 등이고,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일평균 약 110명 정도이다.¹⁰⁾ 본 비용추계는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무료진료소를 신규로 설치¹¹⁾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추계한다. 서울 진료소의 경우 시설설치비(임대비 포함) 4억 3,300만원, 직원 7명(공중보건 의사 2, 간호사 3, 사회복지사 2) 인건비 1억 3,900만원, 운영비 1억 700만원, 약품비 1억 5,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당 단가를 15개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물가상승률¹²⁾을 고려한 경상가격 수준으

10) 사업실적(2009년 기준): 진료 28,904명, 투약 18,868명, 병원연계 10,036명

11) 부산, 대전의 경우 무료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직원 2명의 인건비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므로 실효적인 지원책으로 볼 수 없어서 본 비용추계는 부산, 대전도 포함하여 비용을 추계한다.

12) 국회예산정책처(2010.5), 「2010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p. 71.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6%	2.7%	2.6%	2.9%	2.8%

로 추계한다.

[표 8] 무료진료소 운영사업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시·도(A)	15	15	15	15	15	
비용(B)	858	880	906	931	957	
총비용(A*B)	12,870	13,200	13,590	13,965	14,355	67,980

제정안에 따라 홈리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진료소를 운영할 경우 2012년 128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679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 거리상담사업

안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에게 입소시설안내, 응급환자의 병원이송, 취업정보 및 각종 복지관련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을 거리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한 거리상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이 규정하는 거리상담사업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다. 따라서 본 비용추계는 거리상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의 사례를 참고적으로 제시할 뿐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표 7] 지방자치단체 거리지원사업 사례

(1) 서울

-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운영 : 5개소 700명 이용
 - 잠자리, 급식, 거리상담, 의료지원, 시설연계 등
- 거리상담반(“희망길잡이”) 운영 : 14개반 46명
 - 시설입소 입소유도, 의료서비스 연계, 임시숙박안내 등

- 노숙인 상담소 운영 : 2개소(서울역, 영등포역)
 - 복지 관련 정보제공, 시설입소 상담 등
- 무료급식장(“따스한채움터”) 운영 : ‘10. 5. 4 개소
 - 연면적 4층 410.5㎡(122평)규모, 1회 200명 동시급식
일평균 740명 급식제공
- 겨울철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 매년 11.15부터 4개월간
 - 응급구호방(1일 숙소) 운영 : 2개소 130명, 쪽방 16개
 - 거리상담반 활동 강화 : 46명→ 85명(증39명)
 -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 급식, 온수, 의약품, 피복 등
- 특별자활사업 참여 : 환경정비 등 사업 400명(동절기 600명)
 - 월 15일 근로, 39만원 지급

(2) 부산

- 상담보호센터(2개소)
 - 활동내역 : 노숙인 밀집지역 순회상담 및 안내, 전단지 배포 등
 - 동절기(12월~2월) 매일순찰(22:00~익일 04:30)
 - 지원내용 : 쉼터연계 및 고충상담, 긴급급식, 일자리정보, 샤워, 이발, 임시잠자리, 생필품 제공 등
- 쉼터(6개소)
 - 활동내역 : 전담지역 내 자체적으로 파악된 노숙인 밀집지역 순회 및 안내 전단지 배포/ 주1회 이상
 - ※ 상담보호센터(2개소)의 노숙인 밀집지역을 제외한 취약지역 중점순찰
- 구·군(16개)
 - 활동내역 : 관내 거리노숙인 수시순찰 및 보호조치
 - 지원내용 : 노숙인, 부랑인 발견시 초기상담 후 관련시설로 연계
- 홍보 전단지 배부 : 2,000부

(3) 대구

- 거리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
 - 장소 : 지하철 대구역, 지하철 동대구역
 - 급식시간 : 매일 19:30 ~ 20:30

- 이용인원 : 350명/일
-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 및 상담반 편성·운영
 - 구성 : 시 1개반, 구별(6개구)1개반, 상담소 3개반(1개반 2명)
 - 상담지역 : 대구역, 동대구역, 주요공원, 신천변 등 노숙인 및 쪽방인 밀집지역
 - 활동내역 : 집중 상담을 실시하여 쉼터입소 권유 및 노숙예방
-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 운영주체 : 상담보호센터, 구세군동대구상담소
 - 운영방법 : 응급잠자리 제공 후 상담보호센터 안내 보호조치

7. 홈리스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2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리스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부랑인시설 37개소, 노숙인 쉼터 76개소, 상담보호센터 10개소로 총 12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현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노숙인·부랑인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랑인시설	37	4	3	1	1	1	1	0	3	3	2	1	3	6	2	4	2
노숙인쉼터	76	39	6	5	3	1	4	1	9	4	1	1	2				
상담보호센터	10	5	2	1			1										1

제정안은 홈리스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정안을 통하여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없으므로 본 비용추계는 노숙인·부랑인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별도로 비용을 추계하지 아니한다.

8.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홈리스 임대주택을 지원하며, 사회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2년 199억 3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985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중앙홈리스정책 조정위원회	4	5	5	5	5	24
임대주택 주거지원	5,160	3,870	3,870	3,870	3,870	20,640
사회주거서비스센터	1,869	1,925	1,983	2,042	2,103	9,922
무료진료소 운영	12,870	13,200	13,590	13,965	14,355	67,980
계	19,903	19,000	19,448	19,882	20,333	98,566